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47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이상식 · 임호선 · 이병진
부승찬 · 장경태 · 안도걸
이언주 · 박선원 · 이광희
백선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톱킹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및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변경·연장 조치 시 통지해야 할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에 이를 집행한 경찰이 빠져 있어 집행을 담당할 경찰관이 법원의 결정을 인지하기 어렵고, 잠정조치 실효 또는 연장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여 경찰이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신병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입법 미비를 바로 잡고자 함.

또한 스톱킹 범죄 가해자가 잠정조치 제2호·제3호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끼는 등 추가적인 스톱킹 범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 스톱킹 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잠정조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제2호와 제3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5항, 제11조제4항, 제11조제5항, 제20조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검사와”를 “검사 및 잠정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와”를 “검사 및 잠정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잠정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④ (생략)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u>검사와</u>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검사 및 잠정조치의 집행을</u> 담당한 경찰서의 장과----- -----.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③ (생략)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u>검사와</u> 피해자 및 스톱킹 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톱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검사 및 잠정조치의 집행을</u> 담당한 경찰서의 장과----- ----- -----.
	1. ~ 3. (현행과 같음) ⑤ ----- ----- ----- ----- ----- -----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 실한다. <후단 신설>	----- ----- --.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잠정조치의 집행을 담당할 경 찰서의 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① (생 략)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 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한 사람은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u>3년</u>----- -----<u>3천만원</u>-----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